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정 2018년 12월 19일 조례 제1687호

제1조(「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오산시 도시개발조례」의 개정)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의 개정)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3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